

# 제 안 설 명 서

『중국 안휘성 박주시와 자매결연 안』

영 주 시

## 중국 안휘성 박주시와 자매결연 안

議案 番號	46
----------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제출일자 : 2003. . .

### 1. 제안이유

○ 국제우호교류를 추진해 온 중국 안휘성 박주시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양 도시간의 우의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함.

### 2. 자매결연 추진계획

가. 대상국 및 도시 : 중화인민공화국 안휘성 박주시

나. 박주시(亳州市) 현황

- 3,7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문명의 발상지
- 중국 최대의 한약재 집산지
- ▷ 위 치 : 중국 안휘성 서북부, 북부 황하와 연접
- ▷ 면 적 : 8,394 km<sup>2</sup>
- ▷ 인 구 : 5,250천명
- ▷ 행정구역 : 2개 현(縣), 1개 구(區)

- ▷ 지 세 : 淮北평원에 위치하여 서북부가 높고 동남부가 낮으며, 최고해발 42m, 최저 해발 32m
- ▷ 기 후 : 난온대 반습윤성 계절풍 기후로 연 평균온도가 14.5℃, 연 평균 강수량 811.2mm

○ 일반현황

- ▷ 주민 소득
  - 도시주민 1인당 연 평균수입 5,706元 ( ₩ 896천원 정도),
  - 농민 1인당 연 평균수입 2,030元 ( ₩ 319천원 정도)
- ▷ 관광자원 : 화희누, 조조련병도, 화조엄 조씨묘, 삼국람승궁, 등 200여개 문화재 보유
- ▷ 통 신 : 全市 전화교환기 407천대, 전화기 230천대, 무선전화 284천명, 인터넷 사용자수 31천명
- ▷ 교 육 : 대학교 1개, 단과대학 2개, 고등학교 253개, 소학교 2,083개, 직업고등학교 2,315개소이며, 현·구에서 9년제 의무교육 실시
- ▷ 문 화 : 공연단체 2개, 문화관 4개, 도서관 4개, 박물관 1개, 라디오 방송국 4개, TV방송국 4개

다. 교류 추진경위

- 2001. 2.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해 오던 오현시가 상성구와 오중구로 분리 소주시로 편입됨에 따라 국제자매결연 활성화

지침에 의거 1국가 1도시 원칙과 시급, 직할시가 아닌 구와의 자매결연 불가로 2003. 3. 26 의회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취소

○ 2002. 1. 세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국경사무소 박 승호소장(전 봉화군수)에 우리시와 교류협력이 가능한 중국도시 추천 요청

○ 2002. 2. 25 ~ 3. 2일 우리시 대표단 박주시 방문  
- 방문인원 : 8명(시 : 시장외4, 의회 : 의장외2)  
- 양도시 공동발전을 위한 「우호교류의향서」 교환

○ 2002. 5. 8 ~ 5. 10일 박주시 대표단 우리시 방문  
- 방문인원 : 7명(김거보 시위서기외6)  
- 우호교류 및 경제협력관계 수립 협의서 교환

○ 2002. 9. 7 ~ 9. 12일 우리시 대표단 박주시 방문  
- 방문인원 : 11명(시 : 시장외2, 의회 : 의장외4, 민간인3)  
- 양도시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빠른 시일내 자매결연 추진

○ 2002. 10. 1 ~ 10. 3일 박주시 대표단 우리시 방문  
- 방문인원 : 10명(장후림 부시장외9)  
- 양도시간 공동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합의서 서명

○ 2003. 4. 2일 공무원상호파견에 관한 협의서 체결

라. 향후 교류계획

- 2003. 7 ~ 8월경 양 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 년 1회, 각 1명씩 6개월 과정
- 2003. 7 ~ 8월경 박주시 고등중학생 우리시에서 여름캠프 운영  
- 박주시 고등중학생 40명 정도
- 2003. 9월 중 박주시 9. 9 한약재 교역회시 우리시 대표단 방문
- 2003. 10월 중 우리시 인삼축제시 박주시 대표단 방문
- 민간단체, 여성계 등 상호 방문 추진

마. 자매결연 체결

- 체결예정일자 : 2003. 10월 우리시 인삼축제 때 박주시 대표단 방문시
- 체결장소 : 영주시청회의실
- 체결방법 : 양 시의 대표자가 자매결연체결 합의서에 서명

3.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중 지방정부간 정기적인 대표단, 경제인, 공무원의 상호 파견 연수로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할 요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매결연 체결로 사회전반의 교류로 확대해 나가고자 함.

- 정치·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자원, 농업, 행정, 문화, 경제 등 각종 정보 획득
- 상호공무원의 교환 연수를 통한 양도시의 이해와 국제적안목 고취
- 상호 상공인, 사회단체의 활발한 교류와 기술, 자본의 현지 진출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 21세기 세계화 전략의 구체적 실현으로 국익증진과 한·중 지방 정부간 및 민간 우호교류 협력 증진
- 문화, 예술, 학술교류로 삶의 질 향상

#### 4. 근거법령

##### [ 지방자치법 ]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15조의 4 (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서 “교류협력” 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 중국 안휘성 박주시와 자매결연 안

1. 체결예정일자 : 2003. 10월 우리시 인삼축제 때 박주시 대표단 방문시
2. 체결장소 : 영주시청회의실
3. 체결방법 : 양 시의 대표자가 자매결연체결 합의서에 서명
4. 자매결연 추진사항
  - 가. 양 도시간 호혜평등원칙으로 경제, 기술, 과학, 교육, 관광, 스포츠교류
  - 나. 지역문화축제 상호방문
  - 다.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외국어 능력 배양)
  - 라. 상공인, 사회단체의 기술·자본의 현지 진출을 통한 경제협력
  - 마. 민간단체, 여성계 등 민간 우호교류
  - 바. 기타 양 도시간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 분야